

※별첨자료2: '설악산케이블카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구성 무산' 경과

- 지난해 12월 1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킴이강원행동과 국민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는 설악산케이블카사업의 갈등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고, 주요 쟁점을 해소·예방하고자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구성·운영 지침에 근거한 협의회 구성을 제안하바 있고,
- 지난해 12월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설악산케이블카사업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구성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 이에 원주지방환경청은 지난해 12월 16일, 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처리규정「15,11,30, 환경부 예규 제566호」 제10조에 근거해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운영하겠다고 환경평가과-6843의 공문을 통해 밝힌바 있다.
- 그러나 사업자인 양양군이 갈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갈등조정협의회 불참을 통보하였고, 원주지방환경청은 지난 2016년 1월 5일, 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처리규정「15,11,30, 환경부 예규 제566호」 제10조에 근거해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하였으나, '사업자이자 승인기관인 양양군에서 불참을 알려와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못하고, 갈등조정협의회 운영의 실이기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협의회를 구성·운영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통보하였다. 이에 갈등조정협의회 건은 최종적으로 파행되었다.
- 그러나 국회와 시민사회는 국립공원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된, '자연공원 식도 설치 운영 가이드라인' 위배, 경제성보고서 조작, 자연경관과 아고산대 식생훼손 및 산양 주서식지여부 등이 갈등요소임을 전제로 갈등조정협의회에서의 해소방안을 제안한 것이고,
- 해당 사안들이 국립공원위원회에서도 인정한 7개 부대조건이며, 환경영향평가협약에 있어서도 중요한 검토사항이므로, 사업자의 일방적인 의견만을 수렴해 최종적으로 협의회가 파행된 것은 합리적 절차협의과정에서 원주지방환경청이 심각한 행정오류를 범한 것이라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하여 재개최를 요구했으나,
 - 지난 19일 황계영 원주지방환경청장과의 면담에서도 환경청장은 환경갈등조정협의회 개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반복하였다.
-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위원들은 국회의 요구를 무시한채 환경갈등조정협의회를 개최하지 않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원주청에 전달하였고, 갈등조정협의회 구성과 개최를 다시 요구한 상황이다.